

보도자료



금융위원회		1, 20 - 01, 75				
	보도	배포시		배포	2019.3.25.(월)	장용감독원.
책 임 자	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(02-2100-2684)		담 당 자	차영호 사무관 (02-2100-2683)		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(02-3145-7701)			담 당 자	회계심사총괄팀 김은조 부국장(02-3145-7702)	
		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장 손 호 근(02-3149-0351)			감리1본부 선임감리위원 박 인 숙(02-3149-0363)	

제 목 :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회계감리 新조치양정 기준 시행(4.1일)에 즈음한 간담회 개최

- (고의중과실인) 중대한 회계위반은 제재 수준 전반을 강화
- 중과실 조치는 (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하여)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엄격히 운용
- 연결 판단 오류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

1. 회의 개요

- □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 ('19.4.1)을 앞두고,
 - **조치양정기준을 최종 점검·정리**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

<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시행에 즈음한 간담회 개요>

- 일시 및 장소: 2019.3.25.(월) 14:00~15:0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참석자
 - o (금융위) 김용범 부위원장(주재) (금감원) 전문심의위원
 - o (기업)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, 코스닥협회 상무
 - o (회계업계) 삼일 및 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, 예일회계법인 대표
 - ㅇ (학계)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
 - o (공인회계사회) 감리조사위원장

2.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

가. 그간 제기된 조치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

- □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해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지적
- □ 증선위의 조치 중 **높은 빈도**(50%)를 차지하는 **중과실 조치**에 대해 피조치자의 **제재 수용성이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**가 있음
 - 이는 현행 중과실 요건*이 2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, 그 적용 방식도 "또는" 이어서 넓게 조치되며,
 - *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<u>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</u>한 경우 또는 ②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
 - 중과실과 과실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실무자들은 책임 문제 등으로 다소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임
- □ 한편, 그동안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**현행 기준이 회계환경 변화**에 따라 나타나는 **개별 사례를 포섭하지 못하는**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,
 - 그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이 중선위 내부지침 으로 운영되어 왔는데, 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

나. 조치양정기준의 주요 내용

- □ 금번 조치양정기준의 **기본방향**은 **고의·중과실**인 **중대한 회계 부정**은 **제재수준을 크게 강화**하여 一罰百戒하되,
 - **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**하여 큰 틀에서 **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**하는 것임
- □ 첫째, 중대한 회계부정은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고,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

□ 둘째, 중과실 조치는 **제재수준 강화**에 대응하여 **세부 요**거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 o 적용방식을 "또는"에서 "그리고"로 변경하였으며, 정량적 요소 (중요성 금액 4배 초과)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 ○ 중과실 판단근거 등을 안건에 충실히 기재,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 적용 등「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」시행 ☞ 「첨부」(新양정기준下)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(11p) □ 셋째,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양정기준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, ㅇ 연결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을 낮추는 등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□ 마지막으로,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시행세칙에 신설 다. 기대 효과 및 당부 사항 □ 新조치양정기준이 시행되면,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 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, ○ **중과실 조치**가 **엄격히 운용**되고, 연결 관련 조치기준 등이 **합리적** 으로 정비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□ 新조치양정기준을 중선위 과거 사례에 적용해 보면, 고의・ 중과실의 제재 수준은 크게 높아지고, ○ 고의 : 중과실 : 과실의 비율은 2 : 5 : 3에서 **2** : **3** : 5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*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(7단계) 中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 → 新양정기준 시행 後 중과실 조치비중이 현행 대비 감소(5→3, 40%↓)가 예상 되어 거래정지 조치 받을 가능성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

- □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을 잘 수렴・ 반영하여,新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
 - 엄정하되, 수용성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회계업계 등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기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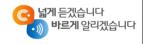
3. 향후 계획

- □ 외감규정 시행세칙 **증선위 보고**(3.28일, 금감원) 後 **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시행**(4.1일) 예정
- □ 4.1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합리적인 조치 양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

[첨부] 회계 조사·감리 新조치양정기준(안) [별첨]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(全文)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회계 조사・감리 新조치양정기준(안)

│ │ 검토 배경

- □ 정부는 「공정한 시장질서 확립」이라는 국정과제下에 **회계부정과 부실감사 근절**을 통한 **기업회계 투명성 제고**를 적극 추진
 - 2017년부터 역사적인 회계개혁을 시작하여 관련 개혁과제들을
 총망라한 新외부감사법・시행령을 전면 개정
 - 외부감사법 시행(18.11월)으로 **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제고**를 위해 노력하고 **중소형 회계법인간 합병의 움직임**도 보이는 등 **현장에 긍정적인 변화**가 나타나고 있음
- □ 이러한 회계개혁의 긴 여정에서 **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***은 新외부감사법령 개정의 **최종 후속조치**
 - * 외감규정 별표 7(조치기준)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(19.4.1일 시행예정)
 - 금번 기준개정은 단순히 新외부감사법·시행령에 담긴 **과징금 등** 제재관련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치지 않고,
 - 그 간 증선위 운영과정에서 **보완**이 **필요한 사항** 등을 대폭 반영 하는 등 '09년 이후 10년만에 전면적이고 큰 틀을 바꾸는 작업
- □ 한편, 조치양정기준은 **회계제도**의 끝단에서 **자본시장 Player들**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
 - 이에 대한 재설계·운영은 **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뒤지지 않을**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
 - ⇒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여
 제재의 징벌력 및 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은 회계개혁의
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

1.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

- □ 그 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미온적 대처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 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지적
 -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**회계정보**에 대한 **국내외 투자자들**의 신뢰가 아주 낮아졌고 시장 자율적 치유도 어렵다는 인식 확대
 - → 회계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회계개혁이 더딘 주요 원인으로 작용

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

- ① 고의적 회계부정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
 - * 회사 대표이사 → 현재도 해임권고 조치가 있으나 (고의 1단계시 해임권고, 고의 2단계시 해임권고 가능) 고의 2단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로만 운영중이며, 해임권고해도 주총 확정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
 - * 회계법인 대표이사 →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 없음
- ② 대규모 회계분식에 대해 최고수준 조치를 하여도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(대우조선해양 '14년 기준 3.5조원 분식회계 → 과징금 45억원)

2. (빈도 높은) 중과실 조치가 (불명확한) 추상적 요건만을 근거로 결정되어 피조치자의 수용성이 낮은 문제 지속 제기

- □ 가장 높은 빈도*로 조치되는 중과실의 요건이 (2가지) 추상적 요건만 있고, 요건사이의 적용방식도 "또는"이어서 넓게 조치되며,
 - * 16-18년간 증선위 조치비중, 고의 : 중과실 : 과실 = 2 : 5 : 3
 - **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②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
 - 일부 사례에서 중과실 **위반동기 판단근거**도 **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조치**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

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

- ① 코스닥기업은 <u>중과실 3단계(고의·중과실·과실 각각 7개 단계/ 21개 조치 中 정확히 중간수준인)로만 조치</u>되어도 거래정지되는 등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
 - → 중과실 판단이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
- ② 중과실 위반동기 판단근거를 제시할 때 추상적인 세부요건을 그대로 적시하고 만다는 지적(예시 :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부족한 사례)

3. 급변하는 회계환경 등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함

- □ 그 간 양정기준이 IFRS 회계기준서 도입, 각종 회계개혁 제도 등 변화하는 회계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,
 - **중선위 논의과정**에서 이러한 사유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가 **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**에 대한 **개선 필요성**이 제기

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

- IFRS 10(연결재무제표, 2013년) 시행 이후 연결범위 판단을 잘못하여 규모가 큰 종속회사 전체가 빠질 경우 지적금액이 커서 (위반행위에 비해) 조치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 有
- ②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초기 창업회사 등은 자산규모 대비 매출액이 낮아 위반 금액 대비 조치수준이 매우 높게 나온다는 지적 다수

4. 독립성 위반 기준 등이 (규범성이 약한) 내부지침으로 운영

- □ 감사인의 독립성*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관련 양정 기준은 그간 중선위 내부지침으로 비공개로 운영
 - * 감사인은 피감사 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가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
 - 이에 따라,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, 행정의
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
- → 조치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규범화하여 운영할 필요

Ш

회계 조사·감리관련 조치양정기준(안)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◆ (고의·중과실인) 중대한 회계위반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一罰百戒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되,
 - (피조치자의 수용성이 다소 낮다는 평가가 있는) 중과실 조치는 적용요건 등을 엄격히 운용 → 전체 제재의 균형을 도모
- ◈ 연결범위 오류에 대한 양정기준 정비 등 회계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,
 - 감사인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을 일부 보완하여 규범화

1.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조치수준 강화

- □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% 이내(중과실은 최대 15%)에서 과징금 부과
- □ (임직원의 횡령·배임 등*으로 인한)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
 - * 경영진의 비자금, 횡령·배임,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행위 수정시 상장 진입요건 미달·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- □ 현행보다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되,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

구 분		현 행	변 경		
	<u>법인</u>	(고의) 증권발행제한 2~12월	(고의) 증권발행제한 <u>4</u> ~12월		
	ᆸ건	(고의) 감사인지정 1~3년	(고의) 감사인지정 <u>2</u> ~3년		
회사	대표이사	(고의 1단계) 해임권고 (고의 2단계) 해임권고 가능	(고의 2단계이상) 해임권고 & 직무 정지 6개월 병과		
	임원	(중과실 2단계이상) 해임권고	(중과실 2단계이상) 해임권고 & <u>직무</u> 정지 6개월 병과		
회계법인	대표이사	-	(고의 3단계이상 또는 중과실 1단계이상 으로) 담당이사 (1년이상) 직무정지시 (최대1년) 직무정지 신설		
공인회	회계사	(고의 5단계) 직무정지 3월	(고의 5단계) <u>일부</u> 직무정지 <u>6월</u>		

2.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

- □ 중과실 조치가 좁게 운영되도록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을 변경 하고, 요건들을 세분화하면서 명확화
 - 적용방식을 "또는"에서 "그리고"로 바꿨으며, 정량적 요소 (중요성 금액 4배 초과)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
 - < 新외감규정上 중과실 요건(● 그리고 ②) >
 -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
 - ①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 과정에서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
 - ②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는 경우
 - ③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
 - ②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
 - ①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
 - ②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,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
 - ③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·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□ 중과실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토록 지도,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하는 등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시행
 - ※ (新양정기준下)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(☞ **참고 11p**)

3. 회계환경 변화를 양정기준에 충실히 반영

- □ 연결범위 판단 오류*와 관련한 양정기준 특례 신설
 - *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비해 과잉제재 조치된다는 지적
 -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금액을 1/4로 낮추어 조치단계를 하향 조정
 - 회사의 자산·매출의 평균(규모금액) 대비 위반지적금액 비율로 계산되는 규모비율이 64%이상이더라도 가중 사유로 미적용

- □ 소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리적 조치 방안 마련 ○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 또는 (3년 평균) 매출액이 **1,000억원 미만**인 비상장회사는 추가 감경 ○ (자산 1,000억원 미만) 비상장회사는 규모금액 산출시 매출액이 자산의 30% 미만이어도 (매출액을) 자산의 30%로 계산* * 예) 자산 500억원, 매출액 50억원인 회사의 규모금액 = (500 + 150) ÷ 2 → 규모금액 ↑, 규모비율(지적금액 ÷ 규모금액)이 낮아져 조치단계 하향 4.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을 (일부 보완하여) 규범화 □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을 그간 증선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*하여 시행세칙에 신설 * 예시) <u>독립성의무 위반과 회계감사기준 위반 경합시</u>, 위반의 행위태양과 보호 법익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조치수준을 합산 □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세칙에 추가 * 예시) 감사인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·운용 실태 양호를 감경사유에 추가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IV 1. 기대 효과 □ (고의·중과실인) **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**하게 **엄벌**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될 것을 기대 □ 중과실 조치를 엄격히 운용하고, 연결 사항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 [新양정기준의 효과(고의: 중과실: 과실 비율/과거 3년간 증선위 조치 사례 적용 추정)] (현행) 2 : 5 : 3 → (변경) **2** : **3** : 5 (고의·중과실 제재수준 ↑, 중과실 비중 ↓) ⇒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2. 향후 계획
- □ 외감규정 시행세칙 증선위 보고(3.28일, 금감원)
- □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시행(4.1일)

참고

[新양정기준下]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

1. 검토배경

- □ 新외감규정('19.4.1 시행)은 고의가 아니면 과실 원칙을 신설 하면서 중과실 요건을 현행보다 더욱 엄격히 규율
 - 이는 <u>한도없는 과징금 신설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에</u> 대응하여 중과실 조치 판단은 좀 더 신중히 하자는 취지
- □ 그러나, 실제 **중과실 조치할때** (여전히 존재하는) 추상적인 요건 등에 기인하여 규정 등 개정 취지와 달리 운영될 소지
 - (新양정기준 시행후에도) 실무자는 "직무상 주의의무 현저히 결여" 등 **추상적 요건을 기존과 같이 넓게 해석하여 조치할 가능성**
 - *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, <u>중요성 금액 4배가 적용되는 경우</u>外에 기존에 중과실 조치하였던 사항은 규정개정 前과 유사하게 제재될 가능성
 - (새로 추가된) 세부요건인 "중요성 금액 4배" 산정시 **해석・적용상** 문제(지적 사항 합산 VS 지적사항별 적용)가 제기

2. (新양정기준 시행 後)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

- □ (9가지 중) 적용된 세부요건*을 명확하게 적시하고, 판단 근거를 안건에 최대한 충실하고 상세하게 기술
 - * (적용 세부요건, 9p) 10-① + 20-①, 10-② + 20-①, 10-③ + 20-① 등 9가지
- □ 新외감규정 개정취지(중과실 신중 판단)등을 감안하여 세부 요건 중 "중요성 금액 4배"는 지적사항별로 적용
 - **지적사항별**로 위반행위의 원인이 상이 → <u>동기판단시 원인이</u> 각각 다른 지적사항을 **단순 합산**할 경우 부당한 결과 야기 가능
 - * (예시) 중과실 지적사항 3건/ A(중요도 1), B(중요도 2), C(중요도 2)
 - 단순 합산 : 중과실 조치 ↔ 지적사항별 적용 : 과실 조치
- □ 금융위・금감원・한공회간 과거 조치 사례를 Data base化하여 공유 → 조치의 일관성 제고
 - 과거에 증선위에 "중과실로 부의하였으나 과실로 조치된 사례" 등은 실무 감리 단계에서 과실로 조치안 상정